

한의예과·한의학과·제한동의학술원 교내연구비 지원 한의과대학 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한의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의 연구, 임상을 장려하고, 교내연구비를 지원하고, 제한동의학술원의 연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지원경비는 한의학과와 제한동의학술원 발전기금 중 연구기금을 활용하며, 계속 시행여부를 매 년 회기 말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조. (교내 연구비 지원 자격).

본 내규에 의한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직전년도(3월 1일 - 2월 28일)의 다음과 같은 항목 중 한 가지를 만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1. SCI(E) 논문이 1편을 초과한 경우
2. 전국규모학술지(등재후보지 포함) 4편을 초과한 경우
3. SCI(E) 논문과 전국규모학술지(등재후보지 포함)를 합하여 3편을 초과한 경우
4. 임상실적이 연간 매출 1억원을 초과한 경우

제3조. (연구실적, 임상실적의 계산법)

1. 연구실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여기에서 n 은 전체 논문 저자수를 의미한다.

1) 책임저자, 교신저자의 경우는 $2/n+1$ 로 한다. 다만, 논문에서 책임저자, 교신저자가 각각 단수가 아닐 경우에는 $1/n+1$ 로 한다.

2) 공동저자의 경우에는 $1/n+1$ 로 한다.

2. 임상실적은 의료원이나 부속병원의 교원 개인 진료실적 자료를 활용한다. 단, 대구, 포항부속병원이 아닌 파견병원일 경우에는 임상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4조. (연구비 논문의 발표 방법)

1. 한의예과·한의학과·제한동의학술원의 연구기금을 활용하므로, 연구기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연구논문의 발표는 제한동의학술원 발간 학술지를 포함한 전국규모학술지(학진등재 후보지 포함)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

2. 연구기금 수탁자는 반드시 책임저자, 교신저자 중 1인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3.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은 감사의 글을 표기해야 한다.

본 성과물은 ○○○○년도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제한동의학술원 연구기금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제5조. (업무) 한의과대학 행정실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보직자 회의에서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제6조. (보직자 의무) 연구비지속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학장을 비롯한 한의과대학 보직자는 제한동의학술원 및 한의학과 연구기금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연구과제 수탁자 의무) 연구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수탁 후 1년 안에 논문을 발표해야 하며, 만일 논문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금액(세금 공제전 금액)을 제한동의학술원, 한의학과 연구기금으로 1년 안에 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8조. (사업의 중단) 당해연도 연구비 지원액을 당해회기연도 연구기금으로 재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구비지원 사업이 중단됨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교수회의에서 재적 2/3의 찬성이 있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부 칙

(시행) 이 지침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接 收 番 號

※기재하지마십시오.

2023學年度

한 의 과 대 학 · 제 한 동 의 학 술 원
研 究 費 支 援 申 請 書

연구 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 책임자	소 속	대학		학부(과)
	직위(급)		성 명	(인)

연구비 지원신청서

接收番號					
지원과제	기초의학 연구과제 ()			임상의학 연구과제 ()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성 명		직위(급)		세부전공
	소 속	대학 학부		전화번호	
신청연구비	2,000천원			연구기간	
연구참여자(공동연구원수)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위 연구비 지원을 신청하며 연구비 지원이 결정될 경우 본 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규정을 준수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첨 부 : 1. 연구참여자 경력 1부. <양식 #1> 2. 연구계획서 1부. <양식 #2> 3. 연구요약문 1부. <양식 #3>					
<u>대구한의대학교 총장 귀하</u>					

<양식 #1>

接 收 番 號

Ⅰ. 연구 참여자 경력

1. 공동연구원

성 명	소 속	전 공	직 위	비 고

2. 연구보조원

성 명	소 속	전 공	직 위	비 고

<양식 #2>

接 收 番 號	
---------	--

Ⅲ. 연구계획서

연구과제명	
-------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연구방법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 연구 추진일정(2023.7.1~2024.6.30)

[illegible]

6. 소요예산

(단위:천원)

구 분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비 고
1. 연구활동비	2,000,000원	연구활동비 2,000,000원	
2. 연구보조원 수당 (지원연구비의 30%이내)			
3. 여 비			
4. 인쇄비(수용비)			
5. 참고문헌비(자료수집비)			
6. 재료비			
7. 연구기자재 구입비			
8. 기자재 임차료(수수료)			
9. 회의비			
10. 공공요금등 제잡비			
11. 기타			
계	2,000,000원		

- ※ 1. 소요예산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부족시 별지사용)
 2. 필요항목만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산출근거는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기간 등 구체적으로 근거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 연구보조원 수당 월 100,000원×4개월×1명=400,000원)

<양식 #3>

연구 요약문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내용 ※ 연구의 배경, 목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바랍니다.	